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업무 위탁〉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4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업무와 타인명의 개설, 무자격자 개설, 1인 2개소 이상 개설, 명의 대여 개설 등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 및 사실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제6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실태조사) ①·② (생략) <u><신설></u>	제33조의3(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에 관한 사항에</u>

③ (생략)	<u>한정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 의료인 등 제33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제33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며(제4조제2항),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제33조제8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는 등(제33조제10항)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수·명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면서,¹⁾

1)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33조제2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3조제8항 및 제10항 위반시)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³⁾

□ 의료기관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의료법」 제61조 및 제61조의2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등으로부터 자료제출·보

2)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 상황 및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 관계인 진술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의3⁵⁾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장 병원의 개설·운영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조사 및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약 58명(본부 12명, 지역본부 46명)의 전문 조사인력을 배치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 불법 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인력 >

(2024. 8. 8. 기준, 단위 : 명)

조직	보 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	본 부	서 울 강 원	부 산울산 경 남	대 구 경 북	광 주 전라제주	대전세종 충 청	인 천 경 기
인원	2	58	12	10	8	6	7	5	10

주: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전담 인력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조사 절차에 참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만으로 조사를 실시할 때에 비하여 조사의 인력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의

5)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현행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절차 >

구 분	업무 절차
1. 인지 및 신고	○ 의료기관 내부자 및 외부인의 신고 ○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인지
2.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 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등 기 조사 실시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중복조사 방지) - 현지조사 계획 유무 확인, - 환수결정 여부 확인
3. 사전자료 검토 및 준비	○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분석 실시 - 요양기관 관련(변동사항, 인력, 시설 등) - 자격조회(사업장별, 일용근로소득 등) - 진료내역, 출입국내역 -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 요양급여 심사결정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
4. 계획수립 및 대상기관 확정	○ 건보공단에서 계획수립 후 복지부에 대상기관 확정 및 조사명령서 발부 요청
5. 행정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직원이 보건복지부 조사명령서에 따라 행정조사 실시(기관당 평균 4~5일 소요)
6. 행정조사 후속조치 결정	○ 행정조사 실시 후 후속조치 결정 - 수사의뢰 여부 결정
7. 수사의뢰	○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으로 판단시 관련 단서 또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8. 수사 및 결과 통보 (경찰)	○ 경찰이 사무장병원 혐의 수사(평균 11개월소요) ○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경우 건보공단 및 지자체에 통보 - 사무장 및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포함
9. 환수처분 및 징수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 징수금 환수결정 ○ 고지, 체납처분, 강제징수

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문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조사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됨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제33조의3제2항을 근거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에 협조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위탁 근거 부재로 인해 현장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실태조사 업무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그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맡기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민간위탁⁶⁾에 해당하는데,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기준⁷⁾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행정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행정기관이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민영교도소⁸⁾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분야까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⁹⁾

□ 따라서,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조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할 필요성 및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약사법」 제20조의2는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¹⁰⁾

□ 또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제61조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이 검사 및 사실확인 등을 할 때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주체를 관계 공무원 뿐 아니라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도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3.12., p.42

10) 「약사법」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3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3(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의료법」 제86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체계적임.¹¹⁾

2) 국민건강보험공단(신중검토)

-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 법 개정이 필요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대한병원협회(반대)

-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항을 위탁하는 것은 공무위탁에 관한 일반법 위반 문제 소지가 있으며, 현행 제도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함.

11)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완료('24. 4. 24. ~ '24. 6. 3.) 후 법제처 심사 중임.

4) 대한의사협회(반대)

- 대등한 보험계약 상대자인 건보공단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보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단체에게 조사권 및 징계권을 부여하고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스스로 자율정화활동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5) 대한요양병원협회(반대)

- 수가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방식을 통해 독자적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적절하고 공정성 침해가 우려됨.

6) 대한한 의사협회(반대)

-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조사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 발생할 소지가 큼

7) 대한간호조무사협회(추가 검토)

-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다만, 지나친 역할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8)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 불법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현황
-------------	--------------------------

<연도별 의료기관 행정조사 현황('16~'24.6월)>

2024. 6. 30.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행정조사 기관 수	수사의뢰 기관 수	
		기관 수	수사의뢰 금액
총계	1,295	816	5,321,081
2016	123	83	309,130
2017	142	94	567,046
2018	161	83	762,995
2019	168	92	538,740
2020	30	20	133,506
2021	166	89	387,496
2022	190	123	803,411
2023	208	146	1,605,896
2024.6	107	86	212,861

자료: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인지 유형별 현황('16~'24.6월)>

2024. 6. 30.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건보공단 자체분석		민원 제보 등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계	1,295	902	69.65	393	30.35
2016	123	113	91.87	10	8.13
2017	142	111	78.17	31	21.83
2018	161	78	48.45	83	51.55
2019	168	92	54.76	76	45.24
2020	30	11	36.67	19	63.33
2021	166	118	71.08	48	28.92
2022	190	133	70.00	57	30.00
2023	208	167	80.29	41	19.71
2024.6	107	79	73.83	28	26.17

자료: 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위반 법조항별 환수결정 현황 >

2024. 6. 30. 기준(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계		제33조제2항		제33조제8항		제4조제2항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계	1,012	2,148,723	974	2,127,326	32	14,287	6	7,110
2014	152	206,156	143	202,563	8	3,462	1	131
2015	159	292,991	152	285,695	6	1,550	1	5,746
2016	183	210,780	178	209,914	5	866	-	-
2017	181	397,310	176	397,116	4	77	1	117
2018	101	174,730	99	174,508	-	169*	2	53
2019	93	423,415	91	422,335	1	17	1	1,063
2020	41	190,752	41	190,752	-	-	-	-
2021	17	25,908	17	25,908	-	-	-	-
2022	18	30,664	18	30,664	-	-	-	-
2023	41	65,979	36	60,255	5	5,724	-	-
2024	26	130,038	23	127,616	3	2,422	-	-

주 1. 추가 결정 건으로 기관수 없음

2. 의료법 제33조제10항 위반은 제33조제2항 위반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 결정사례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